

『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12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소외감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개인적으로 노후준비를 할 수 없었던 많은 노인에게 소득의 주요한 원천인 일자리를 제공한 기업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고 이들 기업 등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시장은 노인 취업에 협력하는 기업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고 이들 기업 등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안 제5조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16일(목)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23, 팩스 032-440-876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성 명: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조의2(생산품 우선구매) ① 시장은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5조의2(생산품 우선구매) ① 시장은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 지방자치법 - 제22조(조례)
관련법규 정비대상	
관련자료	

관계법령 발췌사항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